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3. 5. 25.(목) 17:30

「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5건, 국회 본회의 통과

- 비어업인의 건전한 레저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,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등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「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, 「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, 「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5월 25일(목)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법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「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·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 또한,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판매를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,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.

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수산생물질병 진단 시 새로운 간이 진단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. 또한, 수출 및 해외 생산시설 등록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수산생물질병 검역·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.

「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항만용역업, 검수·감정·검량사업을 포괄하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,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였다. 이는 기존의 영세업체 난립으로 인한 안전관리 조직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이 외에도 ▲ 내년 하반기에 개관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한 「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」, ▲ '선원의 날' 근거를 마련한 「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2개 법률안도 같이 통과되었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	책임자	과 장	홍근형 (044-200-5160)
		담당자	사무관	조 솔 (044-200-516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**

	법안명	주요 내용	담당부서
1	**수산자원 관리법**	○ **비어업인**의 수산자원 **포획·채취 제한 기준을 구체화**하고, **조례**로 **지역별** 실정에 맞는 비어업인 **포획·채취 제한 기준** 마련 ○ **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판매 금지**(과태료 2백만원 이하) 등 ○ 비어업인 **금어기·금지체장** 위반 **과태료**(1백만원 이하)를 **벌금**(1천만원 이하)으로 강화 ○ **어업자협약 승인** 업종에 '근해·연안·구획어업'에서 → '**면허어업' 추가**	수산자원정책과 곽재욱 사무관 044-200-5533 류충현 사무관 044-200-5540
2	**수산생물 질병관리법**	○ **수산생물방역관 임명·위촉 권한**을 가진 기관에 **시·군·구청장 추가**(현: 해수부장관, 시도지사), **간이진단키트** 사용 근거 마련 ○ **수출 및 해외 생산시설 등록제도** 도입	어촌양식정책과 안종관 사무관 044-200-5625
3	**항만운송 사업법**	○ **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** 및 **항만운송(관련)사업자 지원** 근거 마련 ○ 항만운송(관련)사업에 대한 **표준계약서 도입** 근거 마련	항만운영과 장기봉 사무관 044-200-5773
4	**국립해양 박물관법**	○ 법률 **제명 변경**(국립해양박물관법→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) ○ **법인격 조항**에 **'국립인천해양박물관' 추가** 등	해양정책과 이형기 연구관 044-200-5231
5	**선원법**	○ **6월 셋째 주 금요일**을 **'선원의 날'**로 정하고 기념식 근거 마련	선원정책과 안준영 서기관 044-200-5745